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(송재봉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24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3.

발 의 자 : 송재봉 · 임호선 · 김영진
이병진 · 이수진 · 김우영
황명선 · 이용선 · 김한규
박정현 · 이광희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권리의 주체로 자연인과 법인을,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을 규정하고 있음. 이 중 동물은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에 해당함.

그러나 반려동물의 경우 손해배상 등에 있어 일반적인 물건과 같이 객관적 가치로만 재단할 수 없는바, 현행법상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.

이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선언적 규정과 함께, 상해 등의 경우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등도 배상하도록 함(안 제98조의2 및 제764조의 2 신설).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8조의2(동물의 법적 지위) ① 동물은 감응력을 가진 존재로서 제98조의 물건에 속하지 아니한다.

② 동물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법의 물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
③ 동물의 소유자, 점유자, 또는 동물에 대한 그 밖의 권리를 갖고 있는 자는 감응력 있는 생명체로서 동물이 가진 가치를 존중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동물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제7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64조의2(반려동물에 대한 특칙) ① 타인의 반려동물을 상해, 학대하거나 죽인 자 또는 상해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그 소유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② 배상의무자는 소유자가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반려동물의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.

③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치료비가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751조제2항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) 제7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8조의2(동물의 법적 지위) ①</u> <u>동물은 감응력을 가진 존재로</u> <u>서 제98조의 물건에 속하지 아</u> <u>니한다.</u> <u>② 동물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</u> <u>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</u> <u>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</u> <u>범위 내에서 이 법의 물건에</u> <u>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</u> <u>③ 동물의 소유자, 점유자, 또</u> <u>는 동물에 대한 그 밖의 권리</u> <u>를 갖고 있는 자는 감응력 있</u> <u>는 생명체로서 동물이 가진 가</u> <u>치를 존중하고 선량한 관리자</u> <u>로서 동물에 대한 보호의무를</u> <u>다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764조의2(반려동물에 대한 특</u> <u>칙) ① 타인의 반려동물을 상</u> <u>해, 학대하거나 죽인 자 또는</u> <u>상해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</u> <u>그 소유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</u> <u>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.</u> <u>② 배상의무자는 소유자가 치</u>

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반
려동물의 객관적 가치를 초과
하는 경우에도 지출한 비용에
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.

③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
여 제2항에 따른 치료비가 부
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
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
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배상
에 관하여는 제751조제2항을
준용한다.